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 제18호 관련)

2023. 2. 8.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2월 8일(수) 14:00~17:45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소 영 위 원 장

*의결 제16호 및 제22호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18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 진단 시약 개발 및 임상을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시약을 사용하는 임상병원들임. 그런데 그 중 어떤 의료재단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자금을 대출해 주고 그쪽에 임상을 위한 진단시약들을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받았음. 실질적으로 이러한 영업권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던 것임.

- (위원) 임상 관련해서 어떻게 3상에서 2b상/3상으로 중간에 바뀌게 되었는지?

- ▶ (진술인) 제일 처음에 식약처로부터 받은 임상시험승인서에는 단계가 '3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식약처 시스템이 바뀌어서 과거에 '3상'으로 뭉뚱그려서 내주던 승인서를 '2b상'과 '3상'을 별도로 표시해서 내준다고 함.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2019년 11월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두 달 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음. 그로 인해 회사 전반적으로 무슨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웠고, 회사 서류도 분쟁 상대방인 前대표이사 등에게 있어 확인이 어려웠음.
- (위원) 회사의 결산이나 여러 공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모르고 대표자로서의 행위를 하셨다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세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전환사채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금융기관조회서를 발송해서 수신을 다 했는데 거기에 우발이라든지 어떠한 언급도 적혀있는 것이 없었고,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수신했음. 그리고 제1회차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2019년도에 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인한테 회사가 조기상환 청구가 있었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음. 그다음에 조기상환권 실행의 전제조건이 2019년도 내에 3상을 진행했느냐 안했느냐인데 회사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식약처 승인서류는 3상이었음. 만약 2019년말에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한다면 이자율이 2%에서 5%로 올랐어야 하는데 이자 지급된 것을 보면 저희 감사하는 시점까지 다 2%의 이자를 요청

받고 회사가 2%로 다 지급했음. 그래서 지금 그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이것이 유동성 대체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음.

○ (위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제공을 받으셨는지?

▶ (진술인) 받았습시다만, 부속합의서의 존재를 인지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음.

○ (위원) 매출거래와 관련해서 감사인이 파악하셨을 때 회사가 그 거래과정에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 (진술인) 회사는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는 것이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했음.

○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실물이동이 원 제조업체에서 실제 최종소비자에게로 이전되고, 회사처럼 중간단계의 거래에 끼어서 명세서만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하지 않으셨는지?

▶ (진술인) 진단 매출은 계약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진단시약 거래가 점점 늘어나게 됐는데 4기밖에 안 되는 회사이다 보니까 입고증이나 출고증 등이 없다고 해서 추가적인 절차로 채권채무조회서도 보내고 했는데, '이상 없음'으로 받았음.

▷ 세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최대주주인 000가 실질적으로 본인도 회사 회장이 라고 불리면서 사실상 업무지시를 했고 결재했다고 하는데, 과징금 산정할 때 실제 업무집행지시자와 달리 前대표이사 2인에게 형식적인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 (보고자) 대표이사와 업무집행지시자를 각각 병렬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대표이사에 대한 외감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더 무거운 것으로 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임.
- (위원) 감사인이 진술한 내용 중에 식약처에서 임상3상으로 왔는데 그 이후 제도가 바뀌면서 그것이 2b상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 (보고자) 2018년에 식약처에서 3상으로 잘못 내보낸 부분은 있음. 그러나 한 달 안에 수정해서 앞 단계인 2b에 대한 부분이 완료되어야 3상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다시 공문이 나간 상태이고, 감사인이 인지하고 있었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